등록번호	여성가족과-18150
등록일자	2016.5.4.
결재일자	2016.5.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여성정책팀장	여성가족과장	복지환경국장	
손주람	이기희	윤혜경	전결 05/09 이우룡	
협조				

2016년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지원계획

복지환경국

여성가족과

서울중구

2016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지원 계획

관내 아동·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·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지원하여 폭력의 심각성 및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여 아동·여성이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.

Ⅰ 추 진 근 거

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서울특별시 중구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Ⅱ 추 진 방 향

- 성폭력 · 가정폭력 예방 위주 교육 실시
- 폭력의 개념, 간단한 예방 수칙 습득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
- 교육 대상별 상황 및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진행

Ⅲ 세 부 추 진 계 획

- 기　　간 : 2016. 5월 ~ 10월
- 교육대상 : 관내 아동 및 여성 등
- 실시기관 : 관내 가정폭력상담소, 지역아동센터, 장애인 시설, 사회복지관 등
- 교육내용 :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
  - ○ 성폭력·가정폭력의 개념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
  - ○ 폭력 피해 발생 시 지원 절차 및 구제 방법 안내

■ 추진방법

○ 교육 희망기관 수요조사 후 강좌 배정

-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비의무대상 20인 이상 참여기관 우선 선정

※ 의무대상 :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단체에 소속된 모든사람(비정규직, 학생 포함)

○ 교육 실시기관에서 강사 선정

※ 서울시 여성가족재단,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된 전문강사 활용

○ 교육 실시

- 교육 실시 기관은 교육 실시 후 3일 이내 강의확인서, 교육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(※ 증빙 자료 미비시 강사료 미지급, 기관 자부담 처리)

○ 강사료 지급

- 실시기관으로부터 결과 보고서 등 확인 후 여성가족과에서 강사계좌로 강사료 직접 입금
- 강사료 지급 기준 : 1시간 100,000원, 1시간 초과시 150,000원

(※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표에 의거)

Ⅳ 소 요 예 산

■ 소요예산 : 3,00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
○ 산출내역 : 150,000원 × 20회 = 3,000,000원

○ 예산과목 : 여성가족과, 보육·가족및여성복지증진, 여성의 복지향상,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붙임 : 1. 수요조사 대상 시설 1부.

2. 교육 신청서, 강의확인서, 결과 보고서 각 1부. 끝.